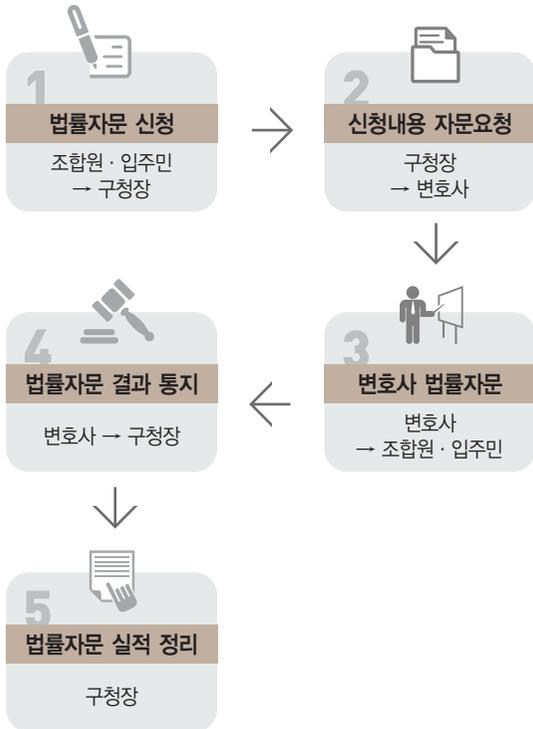


3 운영절차

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절차



- 1)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구청장에게 법률자문 신청
※ '법률자문 신청서'【서식】참조
- 2) 구청장은 법률자문 신청서를 첨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함
- 3) 변호사는 신청자와 일정을 정하여 상담 실시
- 4) 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법률자문 결과를 팩스 또는 e-mail로 통보
- 5) 구청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정리함

울산광역시 북구 (건축주택과)

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T. 052)241-8023 F.052)241-8019

소수 조합원·입주민 개인을 위한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



1 운영개요

지원대상

- **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(개인)**
※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자도 대상이나,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단체는 제외
- **관내 공동주택 입주민(개인)**
※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민 단체는 제외

운영기간

- 2018. 1월 ~ 12월(상시)

법률 도우미

- 변호사 2명

상담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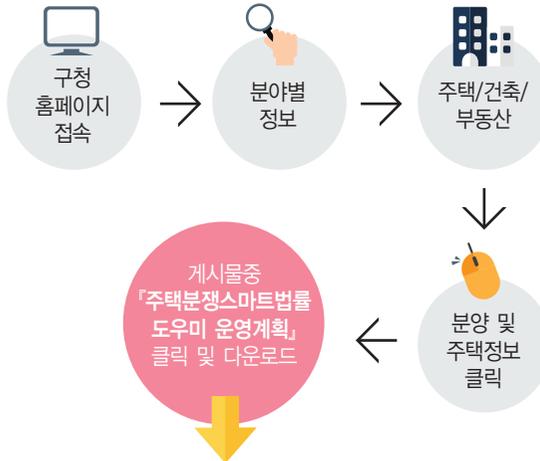
- 무료
※ 구 예산 집행

신청접수

- 『법률자문 신청서』 서식 제출
- 방문접수 : 북구청 1층 동편 건축주택과
- 우편접수 :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울산북구청(건축주택과)
※ 상시접수, 12월 15일까지 도착 분 허용
- 전자우편 : 이메일(jsk37880@korea.kr)로 신청서식 송부 및 유선 통보
※ 북구청 건축주택과(☎ 241-8023)

『법률자문 신청서』 서식은

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『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』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,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건축 주택과에 방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

2 상담분야

변호사 법률자문 내용

- 한 개인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조합규약 ·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, 민 · 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함

법률자문 내용 예시

1)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(개인)

- 조합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- 조합원 부담금(조합운영비, 토지구입비, 건축비 등)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조합원 탈퇴에 관한 사항
- 그 외 조합규약 및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

2) 신청자가 '공동주택 입주민' 인 경우
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동별대표자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- 자치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관리비 ·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· 사용에 관한 사항
-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·보수 등에 관한 사항
- 공동주택 전유부분 경계에 발생한 문제(층간 소음, 층간누수 등)에 관한 사항
- 그 외 관리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